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4 년 10 월 21 일

개정 2015 년 02 월 26 일

개정 2016 년 11 월 22 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재난안전지도사”란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해양안전지도사”란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잠수구조사”란 표면공급식잠수(SSDS) 장비를 이용하여 육상과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중에서 구조·수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스쿠버 잠수”란 수중자가호흡장치(SCUBA)를 이용하여 무감압수심 한계내에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인명구조강사”란 협회의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평가관”이란 인명구조요원 및 인명구조강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검정관”이란 재난안전지도사, 해양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검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독관”이란 잠수구조사, 스쿠버잠수의 자격을 검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자문위원”이란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1. “교육전문강사”란 위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교육강사”란 위 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 교육, 인명구조요원, 교육전문강사 및 교육강사의 양성과 운용을 위한 인명구조 교육업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구, 개발, 자문 또는 의결한다.

1. 인명구조 교육의 내용이 해양사고,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 및 인명구조 활동과의 적합성 여부,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검정의 세부기준 등 인명구조 교육에 따른 제반업무
2. 인명구조 교육 시행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전문강사 및 교육강사의 자격심의, 수당책정, 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 정책 및 제도개발.
5. 교육방침, 교육수품 및 교재개발 등과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변경, 제도의 개선, 교육전문강사 및 교육강사의 해임 등의 심의 및 건의
7. 구조활동 관련 교육기술 모니터링사업
8. 교육관련 제규정에 관한 사항
9.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격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교육전문강사, 교육강사와 인명, 구급관련 이론 전문가 및 현장 실무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충원된 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자문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의안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이사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심의 안건 중 규정의 변경, 제도의 개선, 교육전문강사의 해임 등 중요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의결 내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3.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위원(평가관 활동포함) 활동을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8조(교육전문강사 등의 수당) ① 강사수당(실비포함)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관 : 30만원/일 (검정관, 감독관 포함)
2. 주장사 : 20만원/일
3. 보조강사 : 5만원/일

② 강사수당과 교육실비는 강사 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육강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강사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명구조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보수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업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평가관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평가관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인원은 별지와 같다.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